서울에너지공사 대공원 태양광 발전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447 2018년 4월 5일 환경수자원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8년 3월 27일

다. 상정일자 : 제28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8년 4월 5일 상정 ·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 가. 제안이유

-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난해부터 서울대공원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시민 공모펀드로 투자금을 모집하여 약 1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 하는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이를 위해 '18.1월 시공사가 전액 출자하여 발전소 운영을 전담할 "시민 햇빛발전소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발전사업 허가, 발전소 실시설계 등을 진행 중에 있음.
- 동 사업은 시민펀드를 통한 자금조달의 특성상 사업시행법인의 신뢰성이

요구되며, 시민투자금의 안전한 상환과 발전소 장기 운영을 위해 서울에 너지공사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함.

○ 이에「지방공기업법」제54조제2항에 따라 서울에너지공사의 "시민햇빛 발전소 주식회사" 현금출자를 위해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 나. 주요 내용

- 1) 추진경과
- 가) 공공시설 활용 시민참여형 태양광 설치계획 수립: '17. 8.30
- 나) 과천시 의회 및 과천시 부시장 사업설명회 : '17. 9.26
- 다) 서울대공원 태양광 사업 SPC설립계획 수립: '17.10.24
- 라) 참여사간 양해각서 체결: '17.11.16
- 마) SPC(시민햇빛발전소㈜) 설립 및 법인등기 : '18.1.2
- 발전사업 허가신청 등 적기 사업 추진을 위해 OCI㈜에서 출자 등기바) 발전사업 허가 신청 접수(산업통산자원부 전기위원회): '18.2.12
- 2) 출자개요
- 가) 출자대상 기관
  - (1) 기관명칭 : 시민햇빛발전소 주식회사
  - (2) 출자금액 : 990백만 원(지분율 : SPC 출자금의 약 62.7%)
- 나) 주요사업
  - (1) 대표자 선임, 주주총회 개최 등 시민햇빛발전소㈜ 운영
  - (2) 시민펀드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운영

- (3) 전력판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수익금 적립 및 관리다) 출자 필요성
  - (1) 시민펀드를 통한 자금조달을 위해 사업시행법인의 신뢰성 요구
  - (2) 공동 출자를 통한 위험 분산 및 재무영향 최소화
  - (3) 시민투자금의 안전한 상환 및 발전소 장기 운영을 위해 책임 있는 발전소 운영주체 필요
- 라) 취득되는 권리와 출자에 따른 반대급부
  - (1) 출자지분에 따라 시민햇빛발전소㈜에 대해 의결권을 갖는 주식
  - (2) 시민햇빛발전소㈜의 매기 운영수익에 대해 배당수익 수취
  - (3) 운영종료 후 시민햇빛발전소㈜ 보유자산을 매각하거나 개발하는 경우 발생하는 매각이익 또는 개발이익에 대해 보유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 수익 수취
- 마) 취득되는 권리의 처분계획
  - (1) 대공원 태양광 발전사업 종료 시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청산
  - (2) 대공원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 효율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유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지방공기업법」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 2)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검토 등)
- 3)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0조(사업)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공공시설 활용 시민참여형 태양광 설치계획 수립 : 서울시 방침

- 서울대공원 태양광 발전사업 계획 : 사장 방침

#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선희)

### 가. 개요

○ 본 출자 동의안은 서울대공원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건설사업을 담당하는 특수목적법인 '시민햇빛발전소(주)'에 대하여 서울에너지공사가 현금출자를 하는 것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사업개요

- 서울시에서는 "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에서 태양광 1백만가구 보급, 시민과 함께하는 태양광펀드, 우수 디자인의 공공 태양광 확산, 신규 도시개발 연계 태양광 확산, 태양광산업육성, 시민참여 확대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1GW까지 확대보급할 예정임.
- 본 사업은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10MW(에너지저장시스템(ESS)¹)16MWh 포함)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산되는 전기는 한전에 판매(SMP)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한국지역난방 공사에 20년간 장기공급계약하여 판매할 예정²)이며 총사업비는 262 억원임.

<sup>1)</sup> ESS(Energy Storage System)는 전기를 저장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요금이 싼 시간에 저장하여 전기를 피크타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sup>2)</sup> 태양광 발전소의 수익구조는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는 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 SMP)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 REC란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의 양에 따라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인증서를 발급을 해주고 그 인증서를 신재생 공급의무 발전사(18개 회사)에 인증서만 매매하는 것을 말함.

#### <표 1> 사업개요

구 분	내 역	
 사업명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운영자	시민햇빛발전소 주식회사	
출자자	-서울에너지공사 : 9억 9천만원(62.66%) -OCI(주) : 5억 9천만원(37.34%)	
사업대상지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270-1외(서울대공원 주차장)	
 면적	168,481 m²	
설비용량	태양광 10MW 및 ESS 16MWh	
	착공일로부터 약 4개월(예정)	
운영기간	준공일로부터 20년(단, ESS발전은 15년)	
1일발전시간	3.36시간	
총사업비	262억원	
재원조달방안	자기자본(6%), 시민펀드(85%), 금융권(9%)	

○ 또한, 출자금을 제외한 사업비는 시민펀드와 은행에서 조달할 예정인데 서울시에서는 지난해까지 시민이 참여한 신재생에너지 시민펀드 2개³)를 모집한 바 있고, 암사정수센터에 건설예정인 연료전지 건설사업도 시민 참여형으로 진행할 예정임.

### 다. 검토의견

-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르면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고, 공사의 사장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4).
- O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시의회 의결을 받기 이전에 '타당성 검토 및 시장

<sup>3)</sup> 시민햇빛발전소(82.5억원), 노을연료전지(114억원) 건설시 신재생에너지 시민펀드를 모집한 바 있으며, 이러한 사업방식은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sup>4)「</sup>지방공기업법」에서는 공사의 사장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지방자치법」제 66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은 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이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어 두 개가 법이 상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보고' 등의 절차도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에너지공사에서는 동 규정에 따라 출자타당성 검토용역<sup>5)</sup>, 서울에너지공사 이사회 의결<sup>6)</sup> 및 서울 시장 보고 등의 사전절차를 거친 바 있음

○ 본 출자동의안은 서울에너지공사가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 목적법인 시민햇빛발전소(주)에 9억 9천만원(62.66%)을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7조의2에 따른 사업 타당성 검토결과에서도 수익성이 양호7)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에너지공사의 경영수지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수 있을 것임.

#### <표 2> 수익성 평가결과

구분	산정결과	비고
순현재가치(NPV)	4,951백만원	NPV > "0"이므로 수익성 양호
내부수익률(IRR)	5.06%	IRR > 3.32% 이므로 수익성 양호
투자회수기간 (Payback Period)	11.14년	사업기간(20년)보다 작으므로 수익성 양호
수익성지표 (Profitability Index)	1.17	PI > "1"이므로 수익성 양호

○ 또한, 시민펀드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 건설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 수용성을 높이고, 태양광 보급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본 출자 동의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sup>7)</sup> 출자타당성 검토를 위한 주요 가정;

구 분	내 용	비고
할인율	4.5% 적용	
태양광 모듈 효율감소율	0.5% (연간)	
ESS 발전가중치	4.5	2018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SS 발전효율	90%(연간 2%감소)	
RPS 가중치	0.79	2018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전력판매단가	183.65원(SMP 105.06원, REC 78.59원)	

<sup>5)</sup>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 출자 타당성 보고서, 2018. 3

<sup>6)</sup> 제10회 이사회('18.3.23) 개최결과「서울대공원 태양광발전사업 SPC출자안」을 "원안의결"하였음

# 관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6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지방공기업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검토 등) ① 공사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제47조제4항의 요건을 갖춘 전문 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1.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 2.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별 수지분석
  - 3. 재원 조달방법

- 4.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③ 공사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
-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및 제32조에 따른 에너지진단 관련 사업
- 4. 환경 · 에너지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운영
-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 관련 사업
- 6. 사회취약계층의 에너지이용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
- 7. 제1호부터 제6호 관련 조사, 연구, 개발, 교육, 홍보 및 컨설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사업
- 8. 제1호부터 제7호 사업을 위한 토지ㆍ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ㆍ설치ㆍ운영ㆍ대여 및 양도
- 9. 제1호부터 제8호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류사업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1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6. 토론요지 : 없 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서울에너지공사 대공원 태양광 발전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

의 안 번 호 2447

제출년월일: 2018년 3월 20일 제 출 자: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서울에너지공사와 지난해부터 서울대공원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시민공모펀드로 투자금을 모집하여 약 1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나. 이를 위해 '18.1월 시공사가 전액 출자하여 발전소 운영을 전담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발전사업 허가, 발전소 실시 설계 등을 진행 중에 있음
- 다. 동 사업은 시민펀드를 통한 자금조달의 특성상 사업시행법인의 신뢰성이 요구되며, 시민투자금의 안전한 상환과 발전소 장기 우영을 위해 서울에너지공사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함
- 라. 이에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에 의거 서울에너지공사의 "시민 햇빛발전소 주식회사" 현금출자를 위해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추진경과

1) 공공시설 활용 시민참여형 태양광 설치계획 수립 : '17. 8.30

- 2) 과천시 의회 및 과천시 부시장 사업설명회 : '17. 9.26
- 3) 서울대공원 태양광 사업 SPC설립계획 수립: '17.10.24
- 4) 참여사간 양해각서 체결 : '17.11.16
- 5) SPC(시민햇빛발전소㈜) 설립 및 법인등기 : '18.1.2
  - 발전사업 허가신청 등 적기 사업 추진을 위해 OCI㈜에서 출자 등기
- 6) 발전사업 허가 신청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18.2.12

# 나. 출자개요

- 1) 출자대상 기관
  - 가) 기관명칭 : 시민햇빛발전소 주식회사
  - 나) 출자금액: 990백만 원(지분율: SPC 출자금의 약 62.7%)
- 2) 주요사업
  - 가) 대표자 선임, 주주총회 개최 등 시민햇빛발전소㈜ 운영
  - 나) 시민펀드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운영
  - 다) 전력판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수익금 적립 및 관리
- 3) 출자 필요성
  - 가) 시민펀드를 통한 자금조달을 위해 사업시행법인의 신뢰성 요구
  - 나) 공동 출자를 통한 위험 분산 및 재무영향 최소화
  - 다) 시민투자금의 안전한 상환 및 발전소 장기 운영을 위해 책임 있는 발전소 운영주체 필요
- 4) 취득되는 권리와 출자에 따른 반대급부
  - 가) 출자지분에 따라 시민햇빛발전소㈜에 대해 의결권을 갖는 주식
  - 나) 시민햇빛발전소㈜의 매기 운영수익에 대해 배당수익 수취

- 다) 운영종료 후 시민햇빛발전소㈜ 보유자산을 매각하거나 개발 하는 경우 발생하는 매각이익 또는 개발이익에 대해 보유 지분 비율에 따라 배당수익 수취
- 5) 취득되는 권리의 처분계획
  - 가) 대공원 태양광 발전사업 종료 시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청산
  - 나) 대공원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 효율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유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공기업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 ①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 당성검토 등)
  - ① 공사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제47조제4항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1.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 2.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별 수지분석
  - 3. 재원 조달방법
  - 4.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③ 공사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 3)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0조(사업)
  - ① 공사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
    -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및 제 32조에 따른 에너지진단 관련 사업
    - 4. 환경·에너지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운영
    -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 관련 사업
    - 6. 사회취약계층의 에너지이용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
    - 7. 제1호부터 제6호 관련 조사, 연구, 개발, 교육, 홍보 및 컨설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사업
    - 8. 제1호부터 제7호 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설치·운영·대여 및 양도

- 9. 제1호부터 제8호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류사업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1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공공시설 활용 시민참여형 태양광 설치계획 수립 : 서울시 방침

- 서울대공원 태양광 발전사업 계획 : 사장 방침

※ 작성자 : 서울시 기후화경본부 화경정책과

(팀장 최철웅 ☎ 2133-3523 / 담당 김수정 ☎ 2133-3519) 서울에너지공사 햇빛발전부

(부장 조창우 ☎ 2640-5320 / 담당 정규창 ☎ 2640-5322)